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8
----------	-----

2021. 10. 22.(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0월 13일

-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호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을 임시보호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 하고 심리치료·사회복귀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 「충청북도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위 치 : 충북 도내(비공개 시설)
- 시설현황 : 건물(주택) 1층 97.05㎡, 2층 66.95㎡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수탁기관 :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
- 위탁방법 : 재위탁
- 예 산 액 : 336,656천원(국비 72,700, 도비 263,956)
- 위탁사무
 -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보호
 - 피해장애인 숙식 및 일상생활훈련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 피해장애인 상담 및 법률·권익옹호 지원
 - 피해장애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
 - 피해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자립지원 등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36,656천원(국비 72,700, 도비 263,956)

*21년 기준, 연도별 변동가능

인건비(248,284천원)	운영비(88,372천원)
· 센터장 : 53,354천원 × 1명 = 53,354천원	· 업무추진비 = 1,020천원
· 생활재활교사 1 : 35,435천원 × 1명 = 35,435천원	· 여비 = 1,000천원
· 생활재활교사 2 : 33,664천원 × 1명 = 33,664천원	· 수용비및수수료 = 10,363천원
· 생활재활교사 3 : 32,834천원 × 1명 = 32,834천원	· 공공요금 = 6,720천원
· 생활재활교사 4 : 31,050천원 × 1명 = 31,050천원	· 제세공과금 = 1,250천원
· 조 리 원 : 21,870천원 × 1명 = 21,870천원	· 차량비 = 8,787천원
· 퇴직적립금 = 17,181천원	· 시설비 = 21,778천원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 22,896천원	· 자산취득비 = 750천원
	· 생계비 = 23,100천원
	· 수용기관경비 = 1,200천원
	· 피복비 = 2,160천원
	· 의료비 = 1,400천원
	· 교육비 = 600천원
	· 사업비 = 8,244천원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되어 학대 피해 장애인의 긴급 분리·보호, 상담, 치료 및 건강관리,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피해 장애인쉼터 운영과 관련해,
 - 장애인 관련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음.

□ 충북피해장애인쉼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사단)장애인부모연대
- 위 치 : 충주소재(비공개 시설)
- 입소정원 : 8명(주 7일, 24시간 운영 / 입소기간 최대 3개월)
- 시설인력 : 6명(시설장 1, 생활지도원 4, 조리사 1)
- 시설규모 : 2층 주택(1층 97.05㎡, 2층 66.95㎡)
- 입·퇴소 절차
 - (입소) 도, 시·군 입소 필요성 및 적격여부 판단 후 쉼터에 의뢰
 - (퇴소) 입소기간 만료 및 입소자 퇴소 희망, 이송 등 사유 발생 시
- 사업내용
 - (임시보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보호
 - (숙식제공) 피해장애인 숙식 및 상담 지원
 - (의료지원)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
 - (사회복귀)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나. 종합 검토의견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충청북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센터는 충청북도가 2019년 6월,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참여해 충주 설치가 확정되었고, 같은 해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사)장애인부모연대를 선정하고, 10월 2일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있었음.

- 피해장애인쉼터 설치에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시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한 바, 비록 민간 위탁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이지만, 조례에 따른 제도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장애인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고, 제4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피해장애인쉼터 사무는 그 특성 상 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서 적정하며,
 - 또한,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6쪽에 제시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8.]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48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0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을 임시보호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 하고 심리치료·사회복귀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 「충청북도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위 치 : 충북 도내(비공개 시설)
- 시설현황 : 건물(주택) 1층 97.05㎡, 2층 66.95㎡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수탁기관 :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위탁방법 : 재위탁
- 예산액 : 336,656천원(국비 72,700, 도비 263,956)
- 위탁사무
 -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보호
 - 피해장애인 숙식 및 일상생활훈련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 피해장애인 상담 및 법률·권익옹호 지원
 - 피해장애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
 - 피해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자립지원 등

※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별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36,656천원(국비 72,700, 도비 263,956)

*'21년 기준, 연도별 변동가능

인건비(248,284천원)	운영비(88,372천원)
· 센터장 : 53,354천원 ×1명 = 53,354천원	· 업무추진비 = 1,020천원
· 생활재활교사 1 : 35,435천원 ×1명 = 35,435천원	· 여비 = 1,000천원
· 생활재활교사 2 : 33,664천원 ×1명 = 33,664천원	· 수용비및수수료 = 10,363천원
· 생활재활교사 3 : 32,834천원 ×1명 = 32,834천원	· 공공요금 = 6,720천원
· 생활재활교사 4 : 31,050천원 ×1명 = 31,050천원	· 제세공과금 = 1,250천원
· 조리원 : 21,870천원 ×1명 = 21,870천원	· 차량비 = 8,787천원
· 퇴직적립금 = 17,181천원	· 시설비 = 21,778천원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 22,896천원	· 자산취득비 = 750천원
	· 생계비 = 23,100천원
	· 수용기관경비 = 1,200천원
	· 피복비 = 2,160천원
	· 의료비 = 1,400천원
	· 교육비 = 600천원
	· 사업비 = 8,244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불임

○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 불임

○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관계법령 불임

3. 관계법령 : 불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 2 (시설의 위탁)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위탁기간)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 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 6조 (수탁기관의 선정)

- 제 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제10조 (재계약·재위탁)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I. 추진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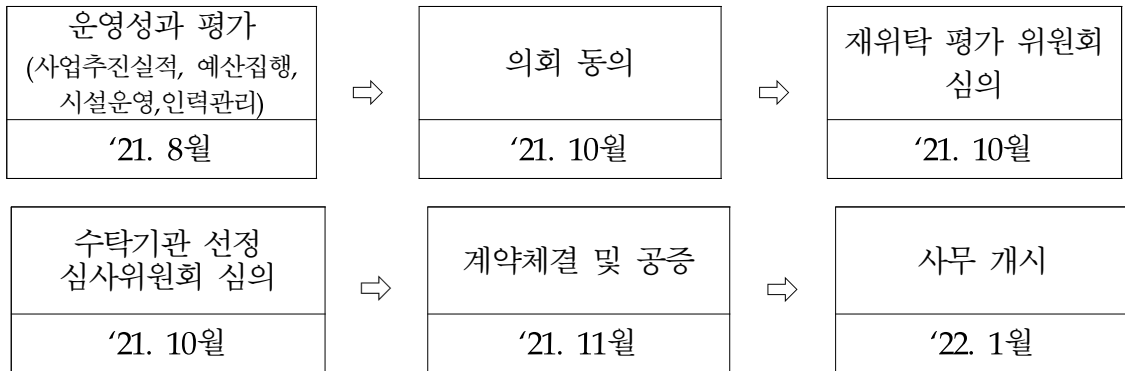
II.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충청북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 (최초위탁) 2019. 10. 2. ~ 2021. 12. 31. (2년 3개월)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
 - ※ (現 위탁기관) 충북장애인부모연대(대표 민용순)
- 위탁기간 :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예산액 : 336,656천원(국비 72,700, 도비 263,956)
- 위탁사무
 -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보호로 2차적 피해 예방
 - 피해장애인 숙식 및 일상생활훈련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 피해장애인 상담 및 법률·권익옹호 지원
 - 피해장애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 피해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자립지원 등

〈 現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위탁현황 〉

- 위탁기간 : 2019. 10. 2. ~ 2021. 12. 31.(2년3개월) ※ 최초위탁
- 시설규모 : 건물(주택) 1층 97.05㎡, 2층 66.95㎡(충주시 소재)
- 수탁자 :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대표 : 민용순)
- 위탁비 : 336,656천원(인건비 248,284, 운영비 88,372 / '21년)
 - ※ 예산현황 국비 72,700천원, 도비 263,956천원
- 인력운영 : 6명(센터장 1, 생활재활교사 4(2명씩 교대근무), 조리원 1)

Ⅲ. 추진일정



Ⅳ. 세부 추진계획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법적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7조
- 구성인원 : 6~9명 이내(당연직 2, 위촉직 7)
- 자격요건 : 도 소속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 심의내용 :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수탁법인(단체) 심의
 - ※ 재위탁 평가 심사위원회 병행 개최
 -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계획 등은 별도 방침 수립 예정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협약내용
 -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
 - 위탁운영 권리 양도 불가, 시설물 구조와 용도 임의변경 금지 등
- 공증시기 : '21.11.

Ⅳ. 향후계획

- 충북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 : '21.10.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공고 : '21.10.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1.1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충청북도 피해장애인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4조의2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위탁기관 :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위탁방법 : 재위탁
- 시설규모 : 건물(주택) 1층 97.05㎡, 2층 66.95㎡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최초위탁) '19.10.2~'21.12.31. (2년 3개월)
- 예 산 액 : 336,656천원(국비 72,700, 도비 263,956)

< 충북 피해장애인쉼터 주요기능 >

1.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보호
2. 피해장애인 숙식 및 일상생활훈련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3. 피해장애인 상담 및 법률·권익옹호 지원
4. 피해장애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
5. 피해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자립지원 등
6. 기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사회복귀 방안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피해장애인 쉼터는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9년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으로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 ○ 피해장애인 쉼터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위해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③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물(체험홈) 기능전환(쉼터)을 추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분야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도내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 제고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 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p style="margin-left: 20px;">*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지휘·감독)</p>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장애인 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협력과 쉼터로서의 기능 확대 예상 	

□ 검토결과 : 적정

-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 (피해장애인 쉼터) 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권익옹호기관 등)과 피해장애인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으로 '19년 우리도가 설립한 기관임
 - 도내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피해장애인 긴급 분리 및 보호를 통한 건강관리지원·사회복귀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건물(주택) 1, 2층의 남·여 구분 가능한 시설의 편리성 으로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심의 : '21.10.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공고 : '21.10.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1.11.

1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피해장애인 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7(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

2 추진상황

- 2019.06.05.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인쉼터 설치 공모 선정
- 2019.06.13. 도의회 쉼터 설치·수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보고
- 2019.08.13. 피해장애인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 ’21.8.13.~26
- 2019.09.19.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9.10.02. 위·수탁협약 체결 ※ ’19.10.2.~’21.12.31
- 2019.12.20. 피해장애인쉼터 개소

3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사단)장애인부모연대
- 위 치 : 충주소재(비공개 시설)
- 입소정원 : 8명(주 7일, 24시간 운영 / 입소기간 최대 3개월)
- 시설인력 : 6명(시설장 1, 생활지도원 4, 조리사 1)
- 시설규모 : 2층 주택(1층 97.05㎡, 2층 66.95㎡)
- 입·퇴소 절차
 - (입소) 도, 시·군 입소 필요성 및 적격여부 판단 후 쉼터에 의뢰
 - (퇴소) 입소기간 만료 및 입소자 퇴소 희망, 이송 등 사유 발생 시
- 사업내용
 - (임시보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보호
 - (숙식제공) 피해장애인 숙식 및 상담 지원
 - (의료지원)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
 - (사회복귀)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4 예산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국비매칭)	도비 (추가지원)
합 계	796,456	175,400	621,056	175,400	445,656
2019년	150,000	30,000	120,000	30,000	90,000
2020년	309,800	72,700	237,100	72,700	164,400
2021년	336,656	72,700	263,956	72,700	191,256

5 운영성과

✓ 2019.12.20. 피해장애인 컴퓨터 개소

(기간/단위: '20.1.1,~ '21.6.30. /건)

연번	사업명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율 (%)
1	거주지원 사업	개인별 맞춤형 일상생활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 사회 복귀 시 자립 여건 마련	9,620	8,780	91.1%
2	법률 및 권익옹호사업	경찰조사, 소송등의 법률지원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회 복이 될 수 있도록 함	90	75	83.3%
3	상담지원사업	주 호소 문제와 욕구 파악 통한 심리안정에 기여하고 불안과 두려움 완화를 위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432	378	87.5%
4	직업재활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 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 성 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이용인에게 맞는 직업배치 목적	30	9	30.0%
5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 및 지역 사회 장애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심리적 안정감 증진	115	117	101.7%
6	사회참여 지원사업	개인별 맞춤훈련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여가,문 화생활에 대한 참여기회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여	372	298	80.1%
7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직업재활, 의료, 교육 지원연계	40	35	97.5%

⑥ **우리도 성과평가 결과(82점)** ✓ (평가기간) '20.1.1~'21.6.30

○ **사업추진실적 : 55점**

구분	사업추진실적						
	거주지원 사업	법률 및 권익 옹호 사업	상담지원 사업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사업	자립 및 사후관리	사회참여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배점기준	10	10	10	10	10	10	10
평가점수	10	7	7	4	10	7	10

○ **예산집행, 시설운영, 인력관리 추진실적 : 27점**

구분	예산집행실적	시설운영	인력관리
배점기준	10	10	10
평가점수	7	10	10

타 시도 피해장애인 쉼터 현황 ✓ 전국 19개소 설치·운영

시도	개소	종사자수	예산액(천원)			비고
			계	국비	시도비	
계	19	82	4,565,155	1,235,972.7	3,256,550	
서울	2	9	652,188	72,700	579,488	도비 추가지원
부산	1	4	145,400	72,700	72,700	
대구	1	5	245,400	72,700	172,700	도비 추가지원
인천	1	4	205,000	72,700	132,300	도비 추가지원
광주	1	8	375,000	72,700	302,300	도비 추가지원
대전	1	3	153,680	72,700	80,980	도비 추가지원
울산	1	4	245,000	72,700	172,300	도비 추가지원
세종	1	3	145,400	72,700	72,700	
경기	2	12	681,610	145,400	536,210	도비 추가지원
강원	1	4	221,400	72,700	148,700	도비 추가지원
충북	1	6	336,656	72,700	263,951	도비 추가지원
충남	1	4	145,400	72,700	72,700	
전북	1	3	145,400	72,700	72,700	
전남	1	3	145,400	72,700	72,700	
경북	1	3	145,400	72,700	72,700	
경남	1	4	292,417	72,700	219,717	도비 추가지원
제주	1	3	284,404	72,700	211,704	도비 추가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4>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

1. 시설기준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나.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시설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운영기준

가. 입소정원: 8명

나. 운영시간: 주 7일, 24시간 운영

다.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운영방침
- 2) 직제·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 3) 입소자의 처우요령
- 4) 입소·이용 규정
- 5) 입소자의 생활수칙
- 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
- 7)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 1) 직원 관계철
- 2) 회의록철
- 3) 사업일지
- 4) 문서철
- 5) 문서 접수·발송대장
- 6) 차량 운행일지
- 7) 안전점검표

나. 사업에 관한 장부

- 1) 입소자 관계 서류(상담기록카드, 입소자 카드 등)
- 2)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3)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1)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 3) 예산서 및 결산서
- 4) 비품 출납대장
- 5) 비품 관리대장
-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10조(재계약·재위탁) ①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 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